



6. 기타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

② 수탁자는 전항의 장부 및 서류를 대행업무 종료 후 위탁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때 위탁자에게 인도한다.

**제5조(지급대상자)** 사채원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무기명식 사채에 대하여는 사채권 및 이권의 소지자
2. 기명식 사채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채권자 또는 등록 질권자
3. 등록식 사채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채권자 또는 등록 담보권자

**제6조(사채원리금 지급자금의 인도)**

① "위탁자"는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(지급할 원리금 상당액)을 반드시 지급결제일 미결제 통보시각 이전까지 수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(본부 집중의 경우 제7조에서 지정한 사채원리금지급 출금계좌로 입금한다)

② "위탁자"는 입금 사실을 반드시 "수탁자"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출금계좌 지정 및 담당자 지정)**

① 출금계좌의 지정

1.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지급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당행에 개설된 아래의 요구불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하고 위탁자의 사채원리금지급 용도로 사용한다.

2. 사채원리금 출금계좌

예 금 주	계 좌 번 호	지정용도
		사채원리금 출금

3.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수수료 출금계좌

예 금 주	계 좌 번 호	지정용도
		사채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출금

4. 위탁자는 사채원리금출금계좌 및 대행수수료 출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담당자의 지정: "위탁자"는 사채원리금 입금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, 담당자 변경 시 "수탁자"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담당자 성명	핸드폰 번호 (SMS 교환안내 수신번호)	회사 전화번호

**제8조(지급대행 불능사실 통보)**

위탁자가 원리금 지급기일의 영업마감 시각 2시간 전까지 지급할 자금을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"수탁자"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기관(있는 경우에 한함) 및 수탁기관(있는 경우에 한함)에 즉시 통보한다.

### 제9조.(사채권자의 확정)

- ① 사채원리금의 수령권자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자는 지급원부를 작성하여 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지급원부를 제출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령권자의 인감부를 첨부하여 지급위탁서를 제출한다.
- ③ 본 건 사채가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사채 및 등록필증 일괄등록방식인 경우 제 1항 및 제 2항의 "위탁자"의 제출의무는 "수탁자"의 승인하에 한국예탁결제원의 "수탁자"에 대한 통보로 갈음한다.

### 제10조(지급필 통지의 갈음)

- ① 수탁자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지급필 통지서에 이자지급을 필한 이권을 첨부하거나, 등록사채인 경우에는 출납인을 날인한 이자영수증을 첨부하여 차회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일괄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한다.
- ② 수탁자가 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원리금 지급필 통지서에 원금상환을 필한 채권을 첨부하거나 등록사채인 경우에는 출납인을 날인한 이자영수증을 첨부하여 차회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일괄하여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확인증을 교부한다.
- ③ "수탁자"는 사채원리금을 "위탁자"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며, "위탁자"는 지급필 통지 내역을 출금계좌의 인출 내역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.
- ④ 본 건 사채가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사채 및 등록필증 일괄등록방식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"수탁자"의 교부의무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의 사채원리금 이체확인서(이체영수증) 교부로 갈음한다.

### 제11조(통지 또는 신고사항)

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소각을 위하여 사채를 매입한 때
- 2. 기한 전에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 때
- 3. 차환 발행하게 된 때
- 4. 사채의 등록이 있는 때
- 5. 사채의 이전등록, 이기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있는 때
- 6. 원리금 지급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
- 7. 개인, 주소변경, 명칭변경 또는 법인대표자, 임의대리인, 법정대리인, 재산관리인 등의 선임, 변경, 해임 등의 신고가 있는 때
- 8. 사채에 대하여 공시최고 또는 제권판결이 있거나 사고신고 및 위조 또는 변조된 채권이 있는 때
- 9. 사채에 대하여 질권, 신탁의 설정, 변경, 말소 등의 등록이 있는 때

### 제12조(수탁자의 면책)

- ① 전조의 통지 또는 신고가 있기 전에 수탁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②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하지 못한 위조 또는 변조 채권에 의하여 지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③ 자동이체 지정계좌에 예금 압류, 지급정지 등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④ 사채원리금 지급 기일에 "위탁자"의 별도의 통지 없이 사채원리금 출금계좌에서 사채원리금지급 이외의 사유로 지급되어 계좌의 잔고가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대전보다 적은 경우 "수탁자"는 이에 대해 책임을

지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사채원부의 기재변경)** 위탁자로부터 사채원부의 기재 변경이 수반되는 통지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는 사채원리금지급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수령권자가 확정된 후에는 소유권, 질권, 신탁의 설정, 변경, 말소 등은 하지 아니한다.

**제14조(경비부담)**

- ① 위탁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는 수탁자의 수수료 운영기준에 따른다.
-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,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,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한다. 위탁자는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수탁자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**제15조(계약의 종결)** 이 계약은 원금상환이 개시된 날로부터 \_\_월이 경과하는 날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해지 통고함으로써 종결한다.

- 1.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업무규정 또는 본 계약 조항에 위배하여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
- 2. 사실상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때

**제16조(종결업무)**

- ① 수탁자가 대행업무를 종결한 때에는 종결통지서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계산서를 미지급 자금과 함께 종결일 익일부터 \_\_\_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교부한다.
- ② 위탁자는 전항이 종결통지서 접수 즉시 대행종료 확인증 및 수령증을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의 소정방법에 따라 다음 각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  - 1. 종결 년 월일
  - 2. 종결되는 대행업무의 내용
  - 3. 차후 대행업무의 취급방법
  - 4. 기타 필요한 사항

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위탁자, 수탁자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. . . .

위탁자 (인)  
수탁자 주식회사 하 나 은 행  
지점